



“어선설비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의 해설

본회 검사관리부
제도과장 이 화 우

1. 머릿말

어선법 제 3 조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이 농수산부령인 “어선 설비등에 관한 규칙 {농수산부령 제 749호(79. 1. 24)}이다.

이 규칙은 어선검사의 기본 법령으로서 교통부령인 “선박설비규칙”, “만재 홀수선 규정”, “목선구조규정”, “선박구명설비규칙” “선박기관규정” “선박방화구조규칙”, “선박복원성규칙” “어선구조특수구조규정” 한국선급협회의 규정인 “강제어선구조규정”을 참고로하여 어선에 필요한 조항을 발췌, 제 1 편 총칙, 제 2 편 선체의 구조, 제 3 편 기관, 제 4 편 설비, 제 5 편 복원성, 제 6 편 만재홀수선 및 부칙으로 총 1083 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전 규칙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개정시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그간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일부조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었으며, 선박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1974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1974,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이 1981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1972,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EG '72)가 신조선에 대하여도 1977년 7월 15일부터, 기존선에 대한 선등의 규격등에 대한 일부조정이 4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거쳐 1981년 7월 1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1969년 선박튼수축정협약”(1969, International Conf

erence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IMO TONNAGE '69)이 1982년 7월 18일 발효되어 이에 따른 국내법이 개정되는 등 동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정 규칙은 1983년 8월 5일 공포되어 30일 경과후인 9월 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 제 330 조 내지 제 348 조는 강선의 조타장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선의 항해용구에 관한 규정(제 867 조 내지 제 877 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어 양측을 통폐합하여 특정어선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선에 포함 된 제 330 조 내지 제 348 조를 삭제하고 제 867 조 내지 제 877 조를 전문개정 하였음.

나. 현행 제 349 조 내지 제 374 조는 강선의 여러가지 파이프(관) 장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 3 편 기관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어 양측을 통폐합하여 특정어선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으로 제 3 편 기관의 관장치에서 정함으로써 제 349 조 내지 제 374 조를 삭제하고 제 573 조 내지 제 611 조를 전문 개정하였음.

다. 소형기관의 범위를 제동마력 500마력 이하로 하고 500마력 이하의 주기관을 설치하고 주기관의 실린더에 충기변을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1대만의 공기 압축기를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로써 충기변이 부착된 보조기관을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보조기관을 시동하는데 필요한 수동 공기 압축기 1대로 동력공기압축기 비치를 면제

하였음(제563조).

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제 1종어선에 비치하는 구멍뱃목에는 일부 의장품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이들 어선도 이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였음(제706조).

마. 길이 20미터 미만의 제 1종어선을 제외하고 전 일반어선에 비치하는 구멍정, 단정, 구멍뱃목의 비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권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총톤수 20톤 미만의 제 3종 종업제한 어선에도 적용토록 개정함(제727조)

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반드시 휴대식포말소화기 1대를 비치하도록 하던 것을 20톤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간이식포말소화기 2대(용량이 2리터 이상인 경우 1대)를 휴대식포말소화기에 갈음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며 5톤미만의 어선에는 비치를 면제하였음(제794조).

사. 물치낚시어선, 오징어낚시어선 또는 상어 낚시어선에 대하여는 최대탑승인원 산출 기준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과 오징어 채낚기어선 및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에 적용하도록 개정함(제836조)

아. 강선의 의장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FRP제 어선에도 적용토록 개정함(제855조)

자. 어선에 비치하는 항해용구는 선등과 구분하여 규정하고(제878조) 선등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하였음(제878조, 제880조 내지 제883조)

차. 총톤수 100톤이상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에 규정한 1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10마일 이

상 항해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전신을 총톤수 100톤이상 어선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개정하며(제1018조) 총톤수 10톤이상의 어선으로서 10마일 이상 항행하는 어선에 설치하던 무선전화를 총톤수 5톤이상 어선으로 하고 이 규정과 동일한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5조를 삭제하고 총톤수 5톤이상 어선중에서도 정치망어업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기선권현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중 예인선 1척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은 무선전화의 설치를 면제 가능토록 규정하고(제1020조) 허가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제 6조를 삭제하였음(부칙 2조)

카. 선박톤수 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라 제790조 제 1항, 제792조 본문 및 제 1호, 제793조 제 1항, 제794조 제 1항의 표, 제795조 제 1항의 표 및 제798조 제 1항의 100톤을 80톤으로 적용하며, 제795조 제 1항의 표 및 제864조의 30톤을 20톤으로 적용하고 제989조 제 2항 단서 및 제990조 단서의 50톤을 30톤으로 적용토록 개정하였음.

타. 개정 규칙 시행전에 건조된 어선과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대하여는 제563조의 공기압축기, 제583조의 넘침관, 제611조의 배기가스관 및 제868조 및 제869조의 조타장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구멍뱃목의 의장품 비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 또는 중간 검사시까지 유예하였고 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조항도 기존선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음.

3. 신·구 개정문 내용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제19절 조타장치 제 1관 일 반 제330조(장비의 기준) 1. 상용 및 예비조타장치를 비치.		제 4편(설비) 제 2절의 조타설비와 통폐합하여 제867조 내지 제 875조 재조정하여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2. L이 35미터이상 어선은 동력 상용조타장치를 비치. 단, L이 50미터미만 운반어선은 수동상용조타장치로 대체가능.			(삭	제)			제867조로 조정	제868조 제 2항으로조정.
제331조(예비조타장치)			(삭	제)				
1. 수동상용조타장치 비치어선 :예비조타장치 1조							제869조 제 4항으로 조정	
2. 동력상용조타장치 비치어선 :수동예비조타장치 1조							제869조 제 1항으로 조정	
제332조(재 질)			(삭	제)				
1. 수동조타기, 조타체인 및 활차 :한국공업규격 이상의 것.							제870조로 조정	
2. 틸러 또는 퀴드런트:단강재 이상의 것.								
제333조(조타장치의 부착)			(삭	제)				
1. 동력조타기의 폐위장소에 설치							제874조로 조정	
2. 틸러 또는 퀴드런트는 타두재에 충분히 고착								
3.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설치							제873조로 조정	
제334조(회전 스톱퍼)			(삭	제)				
타각 제한을 위한 회전 스톱퍼를 상갑판상에 설치							제872조 제 1항으로 조정	
제335조(제동장치)			(삭	제)				
틸러 또는 퀴드런트에 비상용 제동장치비치							제872조 제 2항으로 조정	
제 2 관 조타체인을 사용하는 수동 조타장치								
제336조(치 수)			(삭	제)				
1. 틸러등의 치수(별표 84)							제871조 제 1항으로 조정	
2. 스프링 완충장치의 하중은 조타체인 내력시험 하중의 88%							제873조 제 2항으로 조정	
제337조(재 질)			(삭	제)				
충격받는 부재의 주철재 사용 금지							제870조로 조정	
제338조(부 착)			(삭	제)				
1. 조타체인의 작은 각도에서 굴곡방지를 위한 유도 체인활차 부착							제871조 제 2항으로 조정	
2. 조타체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가이드 등 설치							제871조 제 3항으로 조정	
제 3 관 동력을 사용한 조타장치								
제339조(치 수)			(삭	제)				
1. 충분한 능력의 조타기 설치							제868조 제 1항으로 조정	
2. 틸러등의 치수는 타두재 강도에 대하여 충분할 것.								
제340조(정지장치)			(삭	제)				
조타장치의 직접정지 장치 설치							제872조 제 1항으로 조정	
제341조(판제장치)			(삭	제)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예비전로로 조타판제가 가능토록 주 전트와 별도 배선		
제342 (무전압 경보장치) 전기회로 차단시 자동 경보 장치를 조타실 및 기관실에 비치	(삭 제)	
제343조(응급수동펌프) 1. 응급조타용 수동펌프는 조타기 실 내의 구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 조타실로 통하는 전성관등 통신설 비를 설치.	(삭 제)	
제344조(유압계등) 조타실에는 유압계등 계기류 비치	(삭 제)	
제 4 관 수동유압조타장치		
제345조(치 수) 1. 충분한 능력의 조타기 설치 2. 필터등의 치수는 타두재 강도에 충분할 것. 3. 조타류의 치수(별표 84) 4. 유압관 및 밸브는 상용최대압력의 2배이상 견딜 것.	(삭 제)	제868조 제 1항으로 조정 제871조 제 1항으로 조정
제346조(부 착) 1. 폐위된 장소에 조타기 설치, 노출 시 방수덮개 사용. 2. 유압관은 굴곡, 굴곡부는 큰 곡울 을 유지. 3. 이음부는 절검용이 장소에 폭로부 손상방지용 덮개 설치. 4. 관통부분은 수밀유지할 것.	(삭 제)	
제347조(예비조타장치) 예비조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비치.	(삭 제)	
제348조(유압계 조정밸브등) 조타스탠드에는 스톱밸브를 유압계 (각현 1개)와 타각 조정밸브 및 조타 용 급유장치를 부착	(삭 제)	
제20절 제관장치		
제 1 관 일 반		
제349조(배관공작) 1. 관등은 확실하게 부착, 외부로부터의 손상보호 2. 관은 팽창고려 배관하고 진동방지 용 밴드 부착 3. 곡률반지름은 관의 외경의 2배 이상일 것. 4. 방열설비내를 관통시 내장관과 격 리 배관하고 필요시 보온 시공	(삭 제)	제 3 편(기관) 제 6 장 제 I 절의 배관과 통폐합 재조 정하여 제573조 제 1항으로 조정 제573조 제 2항으로 조정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제350조(관의 관통부)			(삭 제)			제574조 제 2항으로 조정		
1. 관 수밀부분 관통시 수밀 유지토 록 시공								
2. 선수 격벽을 관통하는 관에는 상 감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나사조 임 밸브를 격벽의 선수측에 부착								
제351조(선수 격벽 및 선미창격벽에 부 착되는 밸브 및 콕)			(삭 제)			제577조로 조정		
1. 선수격벽 및 밸러스트탱크용 선미 창의 격벽에는 배수용의 슬로우스 밸브 또는 콕을 부착금지								
2. 제 1항 이의 수밀격벽에 부착하는 슬로우스밸브 또는 콕은 접근용이 한 장소에 설치하고 상감판상에서 폐쇄 가능 할 것. 다만, 공소로 하 는 선미창의 격벽에 자동 폐쇄밸브 를 사용시 예외.								
3. 제 2항의 밸브 또는 콕 조작봉 중 량은 밸브 또는 콕에 힘가지지 않 고 상감판상에 조작 가능할 것.								
제352조(재 료)			(삭 제)					
1. 관등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이상								
2. 기관의 발지관 및 밸러스트관은 아연도금 시공한 것일 것.								
3. 선외 배수관(부속 밸브류), 위생 장치, 선외토출밸브등은 주철제 사 용금지								
제 2 관 발지 배수장치								
제353조(일 반)			(삭 제)					
1. 각 수밀구획실 및 방열설비가 된 각 어창에는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제593조로 조정		
2. 배수장치는 선체가 5도 경사한 경 우에도 배수 가능할 것.						제593조로 조정		
3. 발지흡입관의 요건								
① 발지펌프 이외 펌프에 발지 흡 입관 설치시 상호유통방지를 위 한 밸브 또는 콕 설치 할 것.						제578조로 조정		
② 발지관은 다른관과 별개로 배관 할 것.						제578조로 조정		
③ 발지 배수장치에 부착되는 밸브 및 콕은 접근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것.								
④ 기관실의 발지흡입관에는 필요 시 덮개를 가진 마드 박스를 설 치할 것.						제602조로 조정		
⑤ 발지흡입관의 끝에는 로즈박스 를 설치하고 이 로즈박스의 흡입						제602조로 조정		

구 구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구멍의 지름은 10밀리미터 이하로 종면적은 흡입관의 단면적의 3배이상일 것.</p> <p>⑥ 발지흡입관은 탱크내를 통과 금지. 다만, 파이프 터널, 발지 흡입관의 두께를 증가하고 체크밸브 사용시 예외</p>		
<p>제354조(발지흡입관의 지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지지관의 지름(별표 85) 2. 발지주관 및 직접발지흡입관의 지름(별표 86) 3. 발지주관은 발지지관의 지름 이상일 것. 4. 이중저 구조의 기관실에 설치된 독립동력펌프의 직접발지 흡입구가 2개인 경우 그중 1개는 발지지관의 지름까지 감소가능. 5. 수동발지펌프 흡입구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일 것. 	(삭 제)	제599조로 조정
<p>제355조(어창의 발지배수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얼음적재어창의 경우 각어창마다 선체중심선부근에 발지지관 흡입구 및 수동발지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 2. 냉장장치의 경우: 각 어창마다 선체중심선 부근에 방열된 발지헬을 설치, 이에 발지지관 흡입구 및 수동발지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 3. 동결어보냉창의 경우: 각 어창마다 선체중심선 부근에 방열된 발지헬을 설치하고 이에 발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할 것. 4. 어창의 바닥은 적당히 경사 시킬 것. 	(삭 제)	제959조로 조정
<p>제356조(발지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지헬의 설치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냉장창: 길이 13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② 동결어 보냉창: 길이 25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 2. 발지헬 용적을 0.2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발지헬에는 방열덮개를 설치 청소 점검용이한 구조일 것. 4. 공소에 고인 발지를 배출하기 위한 발지헬을 설치하고 별도의 동력 또는 수동펌프에 의한 발지흡입관을 설치할 것. 	(삭 제)	제594조로 조정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제357조(기관실의 발지 배수장치)			(삭 제)				제596조로 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실이 단저구조일 때 :선체중심선 부근에 발지지관 흡입구 및 독립동력펌프의 직접 발지흡입구 각 1개를 설치할 것. 2. 기관실이 이중저 구조일 때 :양현에 각각 발지지관 흡입구 및 독립동력펌프에 의한 발지 직접흡입구를 설치할 것. 								
제358조(공소로 하는 선수미창의 발지 배수장치)			(삭 제)				제597조로 조정	
<p>동력 또는 수동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 단, 351조 제 1항에 규정하는 경우 예외.</p>								
제359조(다이프랭크정부, 체인로커의 발지 배수장치)			(삭 제)				제597조로 조정	
<p>다이프랭크정부 및 체인로커 저부가 상감판하에 있을 때에는 이곳의 발지 배수를 위한 동력 또는 수용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p>								
제360조(작은 구획실의 발지 배수장치)			(삭 제)				제598조 제 2항으로 조정	
<p>발지의 양이 적고 적당히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지배수 관을 설치 생략 무방.</p>								
제361조(동력구동의 발지펌프)			(삭 제)				제598조로 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지펌프 비치수량 : 발지주관에 연결된 주기구동펌프 1대 및 발지주관 및 직접 발지흡입관에 연결된 독립동력 구동펌프 1대 2. 주기구동의 펌프는 독립동력구동의 펌프 대응 가능. 3. L이 25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독립동력구동의 펌프는 수동펌프로 가능. 4. 벨러스트, 잠용수·위생펌프등이 발지주관에 연결된 경우 이를 독립동력구동펌프로 간주. 5. 동력발지펌프는 각 수밀구획에서 흡수 가능토록 배치하고, 다른 발지펌프의 배수중에도 기관실에서 가능토록 배관 6. 독립동력구동 발지펌프는 즉시 흡수 할 수 있는 것. 								
제362조(독립구동 발지펌프의 능력)			(삭 제)				제598조 제 4항으로 조정	
<p>독립동력구동 펌프 및 l이 50미터 이상의 어선의 주기구동의 펌프 : 발지 흡입주관내의 유속을 매분 122리터미터 이상흡입 할 수 있을 것.</p>								

구 구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제363조(수동빌지펌프) 흡입수두는 7.5미터 이하로 상갑판 이상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p>	(삭 제)	제598조 제 2항
제 3 관 청수·해수 및 유관장치		
<p>제364조(밸러스트판) 1. 동력밸러스트펌프의 흡입구를 설 치할 것. 2. 이중저의 선저경사가 5도 미만의 경우에는 흡입구를 증설할 것. 3. 밸러스트 흡입관의 안지름 치수 (별표 87)</p>	(삭 제)	
<p>제365조(배관에 대한 제한) 1. 청수관은 기름탱크, 기름관은 청 수관 통과금지 단, 파이프 턴벨 시 공시 예외 2. 청수관과 해수관은 별개로 배관 3. 동일펌프에 2개이상의 흡입구가 접속시 콕 또는 체크밸브 설치하여 1구획 액체가 타구획에 유입방지 할 것.</p>	(삭 제)	제578조로 조정
<p>제366조(선의로 통하는 관) 1. 선의 해수흡입관 및 선의 배출관 에는 밸브 또는 콕 설치하고 이밸 브 또는 콕은 외판, 외판 보강판, 디이스턴스페이스 또는 쉘이체스트 에 부착할 것. 2. L이 30미터미만 어선의 선의 배 출관의 개구가 계획 만재흡수선 상 방일 경우 밸브 또는 콕설치 생략 가능.</p>	(삭 제)	제584조로 조정
<p>제367조(해수흡입 밸브 및 콕) 1. 해수흡입밸브 또는 콕은 기관실 상판에서 조작용이한 구조로 할 것. 2. 해수흡입 밸브 또는 콕의 흡입구 에는 스트레이너판을 할 것. 3. 유통단면적은 밸브 또는 콕 단면 적의 1.5배 이상일 것.</p>	(삭 제)	제586조로 조정
제 4 관 상갑판상의 제관장치		
<p>제368조(배수관) 1. 각 갑판에는 충분한 수 및 단면적 을 가진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2. 갑판 폭로부의 배수관은 선의로 배출유도 할 것.</p>	(삭 제)	제587조로 조정
<p>제369조(선루 갑판실의 배수장치) 1. 제 1급 폐쇄선루내 및 상설폐쇄</p>	(삭 제)	제588조로 조정

구 구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장치를 갖는 압판실 : 선내의 빌지 웹에 유도할 것.</p> <p>2. 제 2 급 폐쇄선루내 및 상설폐쇄 장치를 갖지 않는 압판실 자동체크 밸브 1개 이상을 사용, 선외로 배출</p> <p>3. 위생장치 배수관은 1개의 자동체크 밸브를 사용, 선외로 배출가능.</p>		
<p>제370조(공기관의 지름)</p> <p>1. 모든 탱크에는 공기관을 설치</p> <p>2. 공기관의 안지름은 주입관의 총단 면적이상 일 것.</p>	(삭 제)	제579조로 조정
<p>제371조(공기관의 개구위치)</p> <p>1. 폭로 압판상에 설치할 것.</p> <p>2. 청수 및 윤활탱크의 공기관이 기 관실에 있을 경우 : 계획 만재흡수 선상방</p> <p>3. 기름탱크 공기관은 발화 우려가 없는 폭로장소에 설치</p>	(삭 제)	제580조 제 2 항 및 제 3 항 으로 조정
<p>제372조(공기관 개구의 폭로 압판상의 높이)</p> <p>상압판상 : 760밀리미터 이상</p> <p>선루압판상 : 450밀리미터 이상</p> <p>단, 조업곤란시 경감 가능</p>	(삭 제)	제580조 제 1 항으로 조정
<p>제373조(폭로부에 있어서의 공기관)</p> <p>1. 공기관 개구단은 비 및 파도의 침 입 방지를 위한 폐쇄장치 설치할 것.</p> <p>2. 기름탱크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벗 기기 쉬운 내식성 금망을 설치 할 것.</p>	(삭 제)	제581조로 조정
<p>제374조(측심판)</p> <p>1. 액체가 고이는 구획에는 측심판을 설치할 것. 단, 측심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액체의 량을 측정 가능 시 예외.</p> <p>2. 측심판은 끈게하고 측심부 충격에 대한 외관손상을 방지할 것.</p> <p>3. 측심판은 접근 용이한 계획만재흡수선보다 상방에 설치. 단, 게이트밸브등을 설치한 기름탱크는 예외.</p>	(삭 제)	제582조로 조정
<p>제563조(공기압축기의 수와 용량)</p> <p>1. 2대 이상비치 (1대는 독립동력 구동 일 것).</p> <p>2. 소형 내연기관으로 증기변 부착시 독립동력 구동 1대</p> <p>3. 소형내연기관으로 수산청장인정시 1대의 동력 또는 수동</p>	<p>제563조(공기압축기의 수와 용량)</p> <p>공기압축기의 비치수량 및 용량</p> <p>1. 2대의 동력구동 공기압축기 비치 (1대는 독립동력 구동일 것)</p> <p>2. 독립동력 공기압축기가 압축 공기 시동될 경우 비상용 공기 압축기를 비치</p>	<p>○ 소형내연기관의 범위를 500BP미만으로 함.</p> <p>○ 주기. 보기 설치하고 이 에 각각 증기변이 부착될 경우 수동공기 압축기 설치 대부분 소형선에 적용 완화 됨.</p>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4. 독립동력 공기압축기가 압축공기로 시동될 경우 비상용 공기압축기 1대 추가 비치 5. 비상용공기 압축기는 모든 기관정 저시에도 시동 가능 할 것. 6. 비상용 공기압축기 시동이 압축공기일 경우 소형공기 탱크 및 수동 공기 압축기 비치 7. 공기압축기 용량 : 제561조의 공기 탱크를 1시간이내 충전할 것.	3. 500HP미만인 주기에 충기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독립동력 구동 1대만 비치 4. 500HP미만인 주기에 충기번이 부착되어 있고 충기번이 달린 보기 비치시에는 수동 공기 압축기 1대만 비치 5. 공기 압축기용량 : 제561조의 공기 탱크를 1시간이내 충전할 것.	
<p>제 6 장 보기의 관장치</p>		
<p>제 1 절 배 관</p>		
<p>제573조(취부물의 보호)</p> 1. 관등 취부물은 확실히 취부하고 손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할 것. 2. 보호가 부패물일 경우 점검이 용이할 것.	<p>제573조(배관공사의 일반원칙)</p> 1. 관등 부착물은 견고히 부착할 것. 2. 땀창과 수축에 견디고, 진동을 방지할 것. 3. 전기기기 근처 배관금지, 단, 배관시 누유수를 방지할 것. 4. 열발생장치 근처 기름관 배관금지 단, 배관시 열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구규정 제349조 제 1항, 및 제 2 항, 제573조, 제574조, 제576조를 통합 조정 하며 제 4 항 신설
<p>제574조(관의 달아내기)</p> 1. 땀창을 고려하여 배관할 것. 2. 진동방지 데금으로 확실히 취할 것.	<p>제574조(관등의 보호)</p> 1. 관등 부착물에 손상 보호장치 할 것. 2. 덮개를 씌우는 경우에는 쉽게 열 수 있는 것일 것. 3. 수밀부 관통시 누유·수 방지	구규정 제573조, 제350조 제 1 항을 통합조정
<p>제576조(배전반 부근의 배관)</p> 1. 배전반 부근 배관금지. 단, 누수 방지를 위한 특수구조일 경우 예외	<p>제576조(밸브의 개폐장치)</p> 선수 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상감판 위에서 개폐하는 나사조임 체크밸브를 선수격벽 앞쪽에 부착할 것.	구규정 제350조 제 2 항을 조정
<p>제577조(관의 탱크내 통과)</p> 보일러급수 청수관 오일탱크내에 유관 청수탱크내에 배관금지	<p>제577조(수밀 격벽의 관 부착물)</p> 1. 수밀격벽에는 관계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독립의 밸브 또는 콕의 부착금지, 단, 선수격벽 외의 격벽에는 부득이한 경우 부착 가능 2. 밸브 또는 콕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구규정 제351조를 조정
<p>제578조(해수관과 청수관의 겸용)</p> 해수관과 보일러의 급수용 청수관은 별개로 배관. 부득이한 경우 혼합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p>제578조(배관의 제한등)</p> 1. 청수관은 기름탱크를, 기름관은 청수탱크의 내부 통과금지. 단, 파이프 터널을 설치시 예외 2. 1개관에 청·해수관 겸용금지 단, 겸용시 혼합방지장치 설치 3. 2이상의 흡입구를 1개의 펌프에 연결한 경우 콕 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구규정 제353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제365조, 제577조 내지 제583조를 통합조정함.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청수관은 기름(기름을 함유하는 물) 관과 따로 배관할 것. 5. 분연펌프에 연결되는 관은 급수·빌지 및 밸러스트펌프에 연결되는 관과 따로 배관할 것. 6. 어창 겸용 디이프 탱크의 기름 밸러스트 및 빌지관은 메어낼 수 있도록 설치 하거나 관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제 1 절의 2 공기관, 축심관 및 넘침관	
제579조(빌지관의 배관) 빌지관은 다른관과 별개로 배관할 것	제579조(공기관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앞뒤에 1개씩 설치한다. 단, 정관의 길이와 너비가 7미터미만인 탱크와 경사진 탱크는 가장 높은 곳에 1개만을 설치가능. 2. 공기관의 합계단면적은 주입관 안지름의 합계단면적의 1.25배이상일 것. 3.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 또는 코오퍼댐의 공기관 안지름은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구규정 제370조를 조정
제580조(유회유 장치의 배관) 유회유관은 다른관과 별개로 배관할 것.	제580조(공기관의 개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로 갑판위에 개구를 설치 2. 청수탱크 및 가열되지 아니하는 유회유 탱크는 기관실에 개구설치 가능. 단, 계획만재 홀수선 상방일 것. 3. 상갑판상 : 760밀리미터이상 선루 갑판위 : 450밀리미터이상 단, 조업 특징에 따라 높이 조정가능. 4. 연료 탱크에는 발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구규정 제371조, 제372조를 통합조정
제581조(분연펌프의 배관) 분연펌프 연락관은 급수 및 밸러스트 펌프에 연락되는 관과 별개로 배관할 것.	제581조(공기관의 폐쇄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개구에는 청소와 교환 용이한 내식성 금속망을, 기름탱크에는 설치할 것. 	구규정 제373조를 조정
제582조(연료유 장치의 배관) 연료유관은 다른관과 별개로 배관할 것. 단, 다른유체(보일러 급수 제외)와 혼합방지장치 설치시에는 예외.	제582조(축심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체가 고이는 구획에는 접근용이한 장소에 축심관을 설치할 것. 2. 기름탱크에 설치하는 축심관의 개구는 폭로 갑판위에 설치할 것. 단, 개구에 게이트밸브 또는 나사박이로 된 메어낼 수 없는 덮개를 설치하는 때에는 계획만재홀수선 윗쪽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에 개구를 설치 가능함.</p> <p>3. 축심관의 안지름: 40밀리미터 이상 일 것. 단, 0° 이하로 생각되는 구획에는 65밀리미터 이상.</p> <p>4. 축심관은 끈게 설치하고, 급힐 경우 축심봉이 쉽게 돌아가도록 할 것.</p> <p>5. 축심관 바로 밑에는 축심봉의 충격에 대한 보호용 이중판을 시공할 것.</p>	
<p>제583조(디프탱크의 유관등) 어창을 연료 탱크로 겸용할 경우의 관장치</p>	<p>제583조(넘침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기관 안지름의 합계단면적이 주입관 안지름의 합계단면적의 1.25배 이하 일 때와 연료유 세팅탱크 또는 연료유 서어비스 탱크는 넘침관을 설치할 것. 2. 넘쳐나오는 기름처리용 탱크를 설치하거나 배관할 것. 3. 사이트글라스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넘침관의 안지름의 합계단면 적은 주입관의 안지름의 합계 단면적의 1.25배 이상일 것. 	<p>신 설</p>
<p>제 2 절 해수흡입밸브와 선외 배출 밸브 등</p>		
<p>제584조(해수흡입관과 선외배출관의 달 아 놓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외 해수관과 흡입관과 배출관은 조작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외관, 보강판, 디스탄스피스 또는 씨이체스트에 달아 놓은 밸브 또는 콕에 연결할 것. 3. 길이 3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최고 흘수선상에서 선외 배출할 경우에는 예외. 	<p>제584조(해수흡 입관과 선외 배출 관의 부착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외 해수흡입관은 외관, 씨이체 스트 또는 선체붙이 디스탄스피스 에 달아 놓은 밸브 또는 콕에 연결 할 것. 2. 선외 배출관은 외관, 선체붙이 디 스탄스피스에 달아 놓은 밸브 또는 콕에연결할 것. 3. 밸브 및 콕은 스테드보울트(선체 붙이) 디스탄스피스에는 보울트로 부착할 것. 	<p>구규정 제366조, 제584조, 제585조, 및 제590조를 통 합조정함.</p>
<p>제585조(해수흡입밸브·선외배출밸브등 의 달아놓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수흡입밸브 등은 접시머리 볼트 로 부착할 것. 2. 스테드볼트로 할 경우 외관을 관 통하지 말 것. 3. 목선은 수산청장 승인 방법에 의 함. 	<p>제585조(해수흡입관과 선외 배출관의 밸브 및 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폐표시가 있는 조작핸들을 바닥 판위의 조작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동력으로 개폐되는 밸브는 수동으 로도 조작가능할 것. 	<p>구규정 제366조, 제367조 및 제588조를 통합조정</p>
<p>제586조(디스탄스 피스와 해수상자의 구 조)</p>	<p>제586조(디스탄스 피스 및 씨이체스트 의 구조)</p>	<p>구규정 제367조 제 2 항을 조정</p>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디스탄스 피스 또는 씨이체스트는 견고하고 짧은 것일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스탄스 피스는 한국공업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2. 씨이체스트는 작고 공기가 채워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 일 것. 3. 선의 흡입구에는 스트레이너 판을 부착하고, 그 총 유통단면적은 흡입구단면적의 2배 이상이며, 저압 증기 또는 압축공기로 청소가능 할 것. 	
<p>제587조(호경 76밀리미터를 넘는 밸브 등의 재료) 강제일 것. 단, 수산청장승인의 경우에는 예외.</p>	<p>제587조(배수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갑판에는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2. 배수구가 선체측판을 관통할 경우 관통부를 보강할 것. 	<p>구규정 제368조를 제조</p>
<p>제588조(해수흡입밸브 또는 콕의 위치와 구조) 기관실 상판에서 밸브 조작용이한 구조일 것.</p>	<p>제588조(선의 배출의 역류방지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현갑판하, 폐위 선루 또는 건현갑판상 폐위 갑판실내의 배수관 및 배출관을 선의 유도시 건현갑판상의 접근 용이한 장소에 개폐표시가 있는 나사 조임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단, 선외배출관의 개구의 하기 단재홀수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0.0 1L을 넘는 때에는 폐쇄장치가 없는 2개의 자동체크밸브를, 0.02L을 넘을 때에는 폐쇄장치가 없는 1개의 자동체크밸브로 대체 가능함. 2. 기타 배수관 또는 배출관의 개구가 건현갑판하방 450밀리미터 아래 또는 하기 단재 홀수선 상방 600밀리미터 아래에 있는 때에는 외판에 직접 부착된 자동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두꺼운 관을 사용시 예외 	<p>구규정 제369조 및 제593조 통합조정함.</p>
<p>제589조(해수흡입밸브 또는 콕의 필터망) 해수흡입밸브 및 콕의 1.5배 이상되는 필터망을 취부할 것.</p>	<p>(삭 제)</p>	<p>제586조 제 3항으로 조정</p>
<p>제590조(선외배출밸브 또는 콕의 차입구) 강선의 선외 배출밸브, 좌금, 디스탄스 피스에는 외판 관통 차입구를 비치할 것.</p>	<p>(삭 제)</p>	
<p>제 3 절 발지관과 밸러스트 관의 장치</p>		
<p>제593조(방출장치) 방출 개구가 최고홀수선 하방에 있을 경우 불시의 해수침입을 방지하는 밸</p>	<p>제593조(발지웨의 설치) 모든 구획의 발지 배출을 위한 발지 웰과 발지관흡입구를 1개이상 설치할</p>	<p>제353조를 조정함.</p>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장 큰 2개의 합제 단면적 이상일 것.</p> <p>8. 선수미 탱크의 지판은 65밀리미터 이상 단, 길이 60미터 미만은 50밀리미터, 35미터 미만은 승인범위 까지 경감가능함.</p>		
<p>제596조(발지펌프의 흡인개소) 동력발지펌프는 선창, 기관실과 축로에서 발지를 흡인 가능 하도록 장치할 것. 단, 수동펌프로 흡인하는 적은 선창의 경우 제외.</p>	<p>제596조(기관실의 발지해수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저구조 : 선체중심선 부근에 발지지관흡입구 및 직접발지 흡입구 각 1개를 설치. 단, 선저 경사도가 5도 미만인 때에는 기관실 양쪽에 발지지관 흡입구를 1개씩 추가 할 것. 2. 이중저구조 : 양쪽에 각각 발지지관 흡입구 및 직접발지 흡입구를 1개씩 설치 3. 비상용발지흡입구를 1개설치하며 밸브 조작핸들이 있는 나사조임 체크밸브를 통하여 주기 냉각수펌프에 유도할 것. 	<p>규정 제357조를 조정함.</p>
<p>제597조(발지펌프의 흡인능력) 유속 122미터/분 이상 흡입 가능할 것.</p>	<p>제597조(선수미구역등의 발지배수 장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인로카등에는 이젝타 또는 수동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 2. 발지탱크용 이중저 및 선수미탱크등에는 동력발지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 	<p>규정 제358조, 제359조, 제300조</p>
<p>제598조(발지펌프의 형식) 자기흡수성 또는 따로 흡수형 펌프일 것.</p>	<p>제598조(발지펌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지펌프의 비치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 되는 발지펌프 1대 ②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하는 발지펌프 또는 주기에 의하여 구동 되는 발지펌프 1대 2. L이 25미터 미만인 어선독립동력 발지펌프대신 수동펌프로 대체 가능함. 3. 배러스트펌프용에 발지흡입관을 연결한 경우 이를 발지펌프로 간주함. 4. 동력발지펌프의 용량 $\theta = 5.75dm^2 \times 10^{-3} (m^3/hr)$ 	<p>규정 제361조, 내지 제363조, 제594조를 통합 조정함.</p>
<p>제599조(직접발지흡입관의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동력 발지펌프중 1대에는 다 른 발지펌프와 별개로 발지흡입 가능토록 설치할 것. 2. 기관실이 수밀격벽에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 1호 규정하는 직접 	<p>제599조(발지흡입관의 안지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지흡입주관 및 직접발지흡입관의 안지름 : $dm = 1.68 \sqrt{L(B+D)} + 25$ 또는 40밀리미터이상(밀리미터) 2. 발지흡입지관의 안지름 : 	

구 구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빌지흡인관을 설치할 것. 3. 소형선에는 생략이 가능함.</p>	<p>$db=2.15\sqrt{l(B+D)+25}$ 또는 40밀리미터이상(밀리미터) 3. 기관실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 $de=\sqrt{2(2.15\sqrt{l m(B+D)+25})}$ 또는 50밀리미터이상(밀리미터)</p>	
<p>제600조(마드박스와 로즈박스) 1. 기관실 빌지흡인관은 상판에서 청 소용이한 마드박스에 연결할 것. 단, 수산청장 승인시에는 로즈박스 로 대체가능함. 2. 선창과 축로의 빌지흡인관은 로즈 박스에 연결할 것. 3. 로즈박스에 흡수구멍의 지름은 10 밀리미터 이하로 총면적은 빌지흡 인관의 단면적의 3배이상일 것.</p>	<p>제600조(어창등의 빌지름 흡입하는 빌 지흡입관의 연결) 동력구동 빌지펌프에 연결할 것. 단 빌지가 적은 어창의 빌지름 흡입하는 경우에는 예외.</p>	
<p>제601조(빌지분배상자) 1. 해수 연료유 겸용 펌프에 연결하는 빌지관은 동시에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록 또는 역정지 밸브를 비치. 2. 빌지분배상자의 밸브는 역정지변 일 것. 3. 빌지배출장치에 연결된 분배상자 의 밸브 또는 록은 기관실 상판위 에 조작 및 접근 용이하게 설치할 것.</p>	<p>제601조(직접빌지흡입관의 설치) 기관실의 직접빌지흡입구 동력빌지펌 프에 연결하며, 빌지흡입주관과는 독 립적으로 배관할 것. 기관실이 수밀 격벽으로 구획될 경우에도 같음.</p>	<p>구규정 제599조를 조정함.</p>
<p>제602조(연료유 탱크등의 빌지관과 배 라스트관) 빌지관등은 강관을 사용. 단, 소형어 선은 수산청장 인정시 동관사용이 가 능 함.</p>	<p>제602조(마드박스와 로즈박스) 1. 기관실 빌지흡입관은 마드박스에 연결할 것. 단, 수산청장 인정시에는 로즈박스에 연결가능. 2. 어창과 축로의 빌지흡입관은 로즈 박스에 연결할 것. 3. 로즈박스의 흡수구멍 지름은 10미 리미터이하로 하고 총면적은 빌지 흡입관의 단면적의 3배이상일 것.</p>	
<p>제603조(위급용빌지흡입) 정순환 펌프의 해수흡입밸브는 기관실 상판에서 조작 가능토록 장치할 것.</p>	<p>제603조(역정지밸브의 설치등) 1. 해수, 연료유를 모두 흡입하는 펌 프에 연결된 빌지관에는 혼합방지 용 록 또는 역정지 밸브를 설치할 것. 2. 빌지배출장치에 연결된 밸브와 록 은 기관실의 접근용이한 장소에 설 치할 것.</p>	
<p>제604조(동 전) 1. 주기동 내연기관의 독립동력 냉각 펌프는 제603조에 준한 빌지흡인관 을 장치하고 안지름은 해수흡인관 의 안지름 이상. 2. 제 1호의 냉각펌프는 제594조 이</p>	<p>(삭 계)</p>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의의 기관실에 있는 독립동력 펌프 중 최대능력을 갖는 것으로 대응가능. 단, 소형어선은 수산청장 허가 시 적용 제외.</p>								
<p>제 5 절 증기관과 배기관 장치</p>								
<p>제610조(드레인배기장치)</p>	<p>증기관에는 드레인 배기장치를 비치할 것.</p>		<p>제610조(증기관)</p>	<p>1. 워터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드레인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p>				
	<p>2.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창 통과가 가능함.</p>							
<p>제611조(연료유탱크와 어창의 관통)</p>	<p>증기관과 배기관의 연료유탱크 및 어창 관통금지. 단, 수산청장 허가시 예외.</p>		<p>제611조(배기가스관)</p>	<p>1. 배기가스관 및 소음기에는 냉각장치 또는 방열장치를 설비하고 소음기는 청소용이한 구조일 것.</p>				
	<p>2. 2대이상의 내연기관의 배기가스관은 상호 연결금지. 단, 1개의 소음기에 2개이상의 내연기관 배기가스관을 연결할 경우 중지중인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배기가스의 침입방지 설비를 할 것.</p>			<p>3. 보일러의 연료관과 내연기관의 배기가스관과의 연결금지 단, 배기가스를 보일러에 이용시 제외</p>				
	<p>4. 배기가스관의 어창통과금지(단, 수산청장인정시 제외)</p>			<p>5. 흡수선 부근에 배기가스관을 개방할 때에는 실린더로 해수가 침입을 방지</p>				
<p>제706조(구명뗏목의 의장품) 제 2 항</p>	<p>연근해 제 1종어선에 비치하는 구난 식량의 12종의 의장품 비치면제</p>		<p>(삭 제)</p>			<p>연근해 1종 어선은 10톤미만이므로 실제 구명뗏목을 비치하지 않음.</p>		
<p>제727조(일반어선의 구명정등) 제 1 항</p>	<p>구명정, 단정, 구명뗏목 비치의 면제 범위 : 길이 20미터 미만 제 1종어선</p>		<p>제727조(일반어선의 구명정등) 제 1 항</p>	<p>구명정, 단정, 구명뗏목의 비치면제 범위</p>		<p>조업(항해구역)이 일반인 경우에는 길이 20미터 이상 또는 제 3종이라도 비치를 완화</p>		
	<p>1.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 제 1종 종업제한 어선</p>			<p>2. 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p>				
	<p>3. 총톤수 20톤 미만의 제 3종 종업제한 어선.</p>							
<p>제790조(소화펌프) 제 1 항</p>	<p>일반어선의 소화펌프의 비치수량</p>		<p>제790조(소화펌프) 제 1 항</p>	<p>일반어선의 소화펌프 비치수량</p>		<p>신톤수 측정법에 의한 구톤수의 환산</p>		
<p>G/T 1,000톤 이상 : 2개</p>	<p>G/T 1,000톤 미만 100톤 이상 : 1개</p>			<p>G/T 1,000톤 이상 : 2개</p>		<p>G/T 1,000톤 미만 80톤 이상 : 1개</p>		
<p>제792조(소화전)</p>	<p>G/T 100톤 이상 일반어선에 비치하는(소화전의 구비요건</p>		<p>제792조(소화전)</p>	<p>G/T 80톤 이상 일반어선에 비치하는</p>		<p>소화전의 구비요건</p>		
						<p>신톤수 측정법에 의한 구톤수의 환산</p>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제793조(소화호오스)	G/T 100톤 이상 일반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오스의 수량	제793조(소화호오스)	G/T 80톤 이상 일반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오스의 수량	신톤수 측정법에 의한 구톤수의 환산				
제794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제 1항)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소화기 수량	제794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제 1항)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소화기 수량	1. 소형어선의 기관실에 비치하는 소화기 수량 완화.				
1. G/T 1,000톤 미만 : 1,000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 포말소화기		1. G/T 5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 BIF 또는 그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 포말소화기		2. 신톤수측정법에 의한 구톤수의 환산				

500~1,000	3개의 휴대식 포말탄산가스, 분말소화기	G/T 500톤이상 1,000톤 미만	3개의 휴대식 포말탄산가스, 분말소화기
100~500	2개의 휴대식 포말탄가스, 분말소화기	G/T 80톤 이상 500톤 미만	2개의 휴대식 포말탄산가스, 분말소화기
20~100	1개의 휴대식 포말탄산가스, 분말소화기	G/T 20톤 이상 80톤 미만	1개의 휴대식 포말탄산가스, 분말소화기

단, G/T 5톤 이상 20톤미만 어선의 제 1호 휴대식 포말소화기 1개에 같은 간이식 분말소화기 2개(간이식 분말소화기 용량이 2kg 일때 1개) 비치 가능.

제798조(노즐) 제 1항	G/T 100톤 이상 일반어선은 소화호오스 1개에 1개의 노즐을 소화호오스 근처에 비치	제798조(노즐) 제 1항	G/T 80톤 이상 일반어선은 소화기 1개에 1개의 노즐을 소화호오스 근처에 비치	신톤수 측정법에 의한 구톤수의 환산
제836조(최대탐재인원) 제 3항	물치낚시어선, 오징어 낚시어선, 상어낚시어선에 대하여 동조 제 2항의 산출기준을 경감할 수 있음.	제836조(최대탐재인원) 제 3항	G/T 20톤 미만어선, 오징어채낚기어선,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에 대하여 동조 제 2항의산출 기준준을 경감할 수 있음.	소형어선과 선원어의 또는 어부를 승선시키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한 승선 인원 산출 기준 완화.
제855조(강선의의장수) 제 1항	강선의 의장수 산정방법을 명시	제855조(강선 및 강화프라스틱제 어선의 의장수) 제 1항	강선 및 강화프라스틱제 어선의 의장수 산정방법을 명시	강화프라스틱(FRP) 제어선의 의장수산출 기준 마련
제864조(낚수등의 경감)	G/T 30톤 미만 제 1종 연근 해어선의 묘수, 묘량 및 쇠사슬 대삭등의 지름 및 길이를 감할 수 있음.	제864조(낚수등의 경감)	G/T 20톤 미만 제 1종어선 연근해어선의 묘수, 묘량, 및 쇠사슬, 대삭등의 지름 및 길이를 감할 수 있음.	

제 2 절 조타설비

제867조(동력조타 장치)	제867조(조타장치)	구규정 제330조 제 1항 및
----------------	-------------	------------------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길이 60미터이상 어선에는 동력 조타장치를 설치			상용과 예비조타장치를 갖출 것.			제867조를 통합조정함.
제868조 (수동조타장치)		1. 수동상용조타시에는 보조조타장치로서 조타삭 1식을 비치. 단, 연안어업 또는 G/T 50톤 미만의 어선은 수산청장 인정시 생략가능.	제868조 (상용조타장치)		1. 상용조타장치능력 : 주기연속 최대출력에서 28sec/65° 2.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 또는 타두재의 지름 229밀리미터 이상인 어선은 동력 상용조타장치 비치.			구규정 제330조 제339조, 제869조, 를 통합조정함.
제869조 (국제항해어선의 조타장치)		1. 주 조타장치는 충분한 강도 및 충분히 조타능력 보유 2. 보조조타장치는 비상시 신속히 작동 가능한 것.	제869조 (예비조타장치)		1. 예비조타장치 능력 : 연속 최대출력의 1/2에서 60sec/30° 2. 동력 상용조타장치가 이중인 경우 예비조타장치를 비치 생략가능. 3. 상부 타두재 직경이 356밀리미터 이상인 어선의 예비조타장치는 동력일 것이며, 예비전동기 1대를 비치. 4. 수동 상용조타시에는 로우프 및 활차등의 예비조타장치의 부품 1조 비치. 5. 유압상용조타시에는 예비조타장치로 전환을 위한 과압방지 밸브를 장치			구규정 제331조 제788조, 제870조, 제876조를 통합 조정함.
제870조 (보조조타장치)		1. 동력조타장치 사용 어선에는 킬러에 제동장치등을 비치하고 및 보조조타장치를 비치할 것. 2. 주조타장치가 이중의 동력장치 일 경우 그중의 하나를 보조조타장치로 간주 3. 소형어선은 수산청장 인정시 킬러, 제동삭 으로서 보조수동 조타장치로 겸용가능.	제870조 (재료)		1. 수동조타기등은 한국공업규격 이상의 것. 2. 킬러, 워드런트는 단강재 이상의 것.			구규정 제332조 제337조를 통합 조정함.
제871조 (킬러회전의 멈춤)		갑판위에 킬러 회전정지장치 설치. 단, 수산청장 인정시 예외.	제871조 (킬러등)		1. 킬러등의 규격(별표 97의2) 2. 유도체인활차는 조타체인이 쉽게 돌아가도록 배치 3. 조타체인과 워드런트의 접촉 부분에는 가이드등을 설치하여 작동의 원활을 기함.			구규정 제336조, 제338조, 제345조를 통합 조정함.
제872조 (조타장치의 작동)		조타설비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	제872조 (정지장치)		1. 조타장치에는 정지장치를 부착할 것. 2. 비상시 타 고정용 제동장치 비치. 단, 유압식으로 밸브를 잠그므로써 타를 고정가능 할때 예외.			구규정 제334조, 제335조, 제340조 제871조를 통합 조정함.
제873조 (스프링장치)			제873조 (완충장치)					구규정 제333조, 제3호,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1. 조타장치를 가진 어선에 완충 장치를 하고 킬러에 연락되는 조타 세틀 예비로 비치. 단, 연안조업 및 G/T 500톤 미만 어선은 예외. 2. G/T 500톤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조타쇠사슬등은 검사규격품 일 것.	1. 유압외의 조타장치에는 충격 방지용 스프링등의 완충장치를 할 것 2. 스프링완충장치의 사용하중은 조타체인의 내력 시험하중의 88퍼센트 이상.	제336조 제 2항 제873조를 통합조정함.								
제874조(선미조타장치) 길이 65미터 이상의 어선의 조타장치는 폐위된 장소에 설치. 단, 선미루 또는 그의 상층갑판에 설치하는 킬러 또는 조타류에 대하여는 예외.	제874조(조타기실) 동력조타장치는 폐위된 장소에 설치 단, 선미루갑판 또는 그 상층 갑판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	구규정 제346조, 제 1항 및 제874조를 통합 조정함								
제875조(키의 지시장치) 국제항행 어선의 동력 조타장치는 키의 정확한 위치를 지시하는 장치를 주조타 장소에 설비	제875조(타의 위치 지시장치) 동력 조타장치에는 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장치를 부착									
제876조(어선의 보조조타장치) 국제항행 어선의 주조타장치가 이종이고 그중 하나로 충분히 조타할 수 있을 때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 생략	(삭 제)									
제877조(동력에 의한 보조조타장치) 국제항행어선의 타두 재의 지름이 35.36센티미터 이상일 때 동력의 보조조타장치 설치.	(삭 제)									
제878조(항해용구등) 제 1항 항해용 구 는 별표 98에 의함. 제 2항 전기선등을 사용하는 G/T500톤 이상어선의 장등, 현등 및 선미등은 이중식일 것.	제878조 제 1항(단서조항 신설) 1. 선등은 별표 98-2에 의함. 제 2항 : 전기선등을 사용하는 길이 50미터 이상 또는 G/T 500톤 이상 어선의 장등, 현등, 선미등은 이중식일 것.	선등과 일반항해용구를 구분함.								
제880조(선등의 합격증명서등) 제 1항 선등 및 신호등은 선등검사 규격에 적합할 것.	제880조 제 1항 선등 및 신호등은 선등시험 규격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할 것.									
제881조(선등의 비치요건) 제 1항 1. 유선등을 비치한어선의 예비등 총 비치수량	제881조(선등의 비치요건)-제 1항 1. 유선등을 비치하는 어선의 예비등 총 비치수량 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 1종 및 길이 21미터 미만어선</td> <td style="width: 50%;">3개 이상</td> </tr> <tr> <td>기 타</td> <td>5개 이상</td> </tr> </table>	제 1종 및 길이 21미터 미만어선	3개 이상	기 타	5개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길이 20미터 미만 어선</td> <td style="width: 50%;">3개 이상</td> </tr> <tr> <td>기 타 어 선</td> <td>5개 이상</td> </tr> </table>	길이 20미터 미만 어선	3개 이상	기 타 어 선	5개 이상	
제 1종 및 길이 21미터 미만어선	3개 이상									
기 타	5개 이상									
길이 20미터 미만 어선	3개 이상									
기 타 어 선	5개 이상									
제 2항 : 길이 21미터 이상어선(제 1종 제외)의 현등에 녹, 홍의 삽입 유리를 사용한 경우 녹, 홍 각 2개의 예비삽입 유리 비치.	제 2항 : 길이 20미터 이상어선의 현등에 녹, 홍의 삽입유리를 사용할 경우 녹, 홍 각 2개의 예비삽입 유리 비치									
	제 3항 : 선등의 빛이 항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설비를 할 것.	(신 설)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p>제882조(현등격판) 제 1 항 현등 격판의 형상 및 치수는 선등 검 사 규격규정에 적합</p>	<p>제882조(제 1 항) 현등 격판의 형상 및 치수는 선등 시 험규칙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p>	
<p>제883조(기적등) 제 1 항 적당장소에 기적 또는 싸이렌 장치 (단서 신설)</p>	<p>제883조 제 1 항 적당 장소에 기적 또는 싸이렌 장치 단, 길이 12미터 미만어선은 음향신 호 장치 대체가능.</p>	
<p>제 1 항 길이 106.75미터이상 어선은 호종과 구분되어 라라 1개 비치</p>	<p>제 2 항 : 길이 100미터 이상어선은 호 종과 구분되는 동라 1개 비치</p>	
<p>제989조(항해등의 급전) 제 2 항 단서 G/T 50톤 미만어선은 예외</p>	<p>제989조 제 2 항 단서 G/T 30톤 미만어선은 예외</p>	<p>신통수측정법에 의한 구통 수의 환산</p>
<p>제990조(경보장치) 단서 G/T 50톤 미만어선의 항해등 제어판 에는 소동에 대한 경보장치 불요</p>	<p>제990조 단서 G/T 30톤 미만어선의 항해등 제어 판에는 소동에 대한 경보장치 불요</p>	<p>신통수측정법에 의한 구통 수의 환산</p>
<p>제1018조(무선전신의 설비) G/T 100톤 이상, 국제항행어선, 10 톤 이상으로 10마일 이상 항행하는 운반선, 지도, 교습선등은 무선전신 설비.</p>	<p>제1018조(무선전신의 설비) G/T 100톤 이상 및 국제항행어선은 무선전신 설비</p>	<p>총톤수 100톤 미만 어선은 무선전화로 완화</p>
<p>제1019조(무선전화 시설) G/T 10톤 이상으로 10마일 이상항행 하는 운반선등 무선전신을 무선전화 로 대체가능.</p>	<p>제1019조(무선전화시설) G/T 5톤 이상은 무선전화설치</p>	<p>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5 조 본규칙 에 수용하고 삭제 개정함.</p>
<p>제1020조(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설의 면제)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설면제 범위 규정.</p>	<p>제1020조(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설의 면제)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시설의 면제 범위 추가 설정 1. 정치망 및 양식어업종사어선 2. 기선권현망어업종 예인선 1척과 운반선 제외한 어선</p>	
<p>별표 84</p>	<p>(삭 제)</p>	
<p>별표 85 별표 86 별표 87</p>	<p>(삭 제)</p>	
<p>별표 91 종업제한과 배의 길이 별로 내연기관 의 비품종류 및 수량명시</p>	<p>별표 91 내연기관의 주기, 보기 구분에 따라 비품의 종류 및 수량명시</p>	
<p>별표 98 항해용구 종업제한과 배의 길이별로 비치 종류 및 수량명시 (신 설)</p>	<p>별표 98의2 선등 설치기준 : 선등의 종류 및배의 길이별 비치 수 량 명시 부 칙</p>	<p>소형어선에 비치할 품목일 부 완화</p>
	<p>1. 공기압축기, 넘침판, 배기가스판, 조타장치에 대하여 기존선은 종전 의 규정 적용 2. 연근해 어선용 구멍엷목의 의장품 은 최초 시행하는 정기, 중간, 검 사까지 설비 3. 기존선에 대한 제790조 제 1 항,</p>	<p>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따라 조정</p>
		<p>기존선에 대한 적용은 구 규정에 의하도록함.</p>

구 규 정	개 정 내 용	비 고
	제792조 본문 및 제 1 호, 제793조 제 1 항, 제794조 제 1 항의표, 제 795조 제 1 항의표 제798조 제 1 항 제864조 제989조 제 2 항 단서 및 제990조 단서에 대하여는 구본수로 적용	

4. 맺 는 말

이 규칙은 전문이 1083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령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업자 및 기관등의 설비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항과 복원성 및 만재홀수선 관계규정과 같이 개조등의 설비의 변경이 없으면 어선 건조시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대부분으로 실제 어선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은 제 4편 설비편의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의 규칙을 조선사업자가 어선 또는 설비의 제작

시에 적용하는 규정과 어선의 운항에 필요한 복원성 및 만재홀 수선에 관한 규정 및 어선의 안전설비에 대한 규정으로 분리하는 방법, 선박에 사용되는 재료의 향상 및 조선기술의 발전에 따른 선체구조, 재료 및 각 설비의 제작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새로운 기술의 반영과 1977년 2월 4일 채택된 "어선안전조약"의 발효에 대한 대비등을 계속 검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

하 루 증 가 2,000 식 구

설 땅 마 저 없 어 진 다